

전장연 시위의 부당성

-존 롤스의 시민 불복종과 법 판례를 중심으로-

우송대학교 철도차량시스템학과 202210573 권율구

목차

1. 서론
2. 존 롤스의 시민 불복종과 전장연 시위의 특징.
3. 클라우스 레플레와 전장연의 시위, 법의 판결과 판례에 따른 시각의 해석.
4. 부당성에 대한 반론과 재반론 그리고 시위의 결론.
5. 결론

1. 서론

우리 사회에서 요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시위가 있다면 바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하 전장연) 의 이동권 자유 시위일 것이다. 이들의 시위는 출근시간대 통근을 하는 직장인들에게 있어 이동권을 저해시킴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시민들의 이동권을 침해하고 있다. 전장연측에서는 서울시에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으로 '마을 저상버스 100% 도입, 지하철 전 역사 엘리베이터 1역사 1동선 100% 예산반영 촉구'등과 같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서울시측에게 촉구하고 있다.¹⁾ 하지만 행정적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 완전히 삽을 뜨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서울시 측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이동권을 동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여러 내세우고 있는데 가령 2005년 이동권을 법률로 명시한 교통약자법이 제정된 뒤 서울시에서는 이동권 선언 발표를 통해 2022년까지 지하철 전역사 엘리베이터 설치 및 2025년 까지 저상버스 100% 도입, 2017년까지 마을 저상버스 도입방안 마련, 승강장과 열차 간 바퀴 빠짐 방지턱 설치를 약속하면서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마련하기 위해 약속해왔으며 이를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나 전장연 측에서는 예산을 즉각적으로 마련하여 곧바로 자신들의 요구를 이행할 것을 강요하고 시위의 격화를 예고하고 있다.²⁾ 이들의 시위가 멎지 않고 계속 시위를 이어나가게 되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쪽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표적으로 될 것이며 이들의 이동권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장애인들의 강요로 묻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번 활동을 통해 이러한 부당한 요구를 강요하는 이들의 시위는 과연 정당한 시위인지에 대한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존 롤스의 시민 불복종에 의거한 비폭력 시위의 요구조건과 법안 내용을 비교해봄으로써 이들의 활동의 부당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 글은 전장연의 시위의 정당성에 초점을 두어 이들의 시위의 부당성을 분석적으로 논평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용어 정의를 통해 네이버 사전과 학술용어사전의 내용을 일부 인용하였으며 전장연의 시위의 부당성에 대한 논증전개를 위한 예시를 도서 '폴 커 키츠 -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에서 발췌하여 인용하였다. 또한 이동권과 시위 비폭력성 강요죄의 범위에 대한 내용을 법안 판결과 법률 내용을 일부 사용하였다.

필자는 전장연이 하는 시위는 부당하다라는 입장에서 이들의 행위가 왜 부당인지에 대한 내용을 논증법을 통해 전개해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2절에서는 먼저 전장연의 시위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존 롤스의 시민 불복종에 의거한 시위에 전제조건에 대해 알아볼 것이며 3절에서는 전장연의 시위와 유사한 도서 내용에서의 예시와 현 상황을 대조해보고 이들의 행위로 인한 법안 판결을 실제 법안 판결과 판례 내용을 대조해봄으로써 전장연의 시위의 위법성에 대해 내용분석을 통해 이들의 행위의 정당성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며 4절에서는 전장연의 시위의 부당성에서 나오는 반론을 재반론 하는 과정을 통해 필자의 논증을 강화하는 활동을 통해 내용을 마무리할 것이다.

2. 존 롤스의 시민 불복종과 전장연 시위의 특징.

먼저 시민 불복종이란 사회정의가 훼손되었을 때 위법 행위를 통해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여 정의로운 상태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치적 행위로 이에 존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 가능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정의의 원칙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위반에 한해서 시민불복종이 가능하다. 둘째, 전체 법 질서에 대한 존중을 전제하고 있기에 시민불복종으로 인한 처벌을 감수해야 한

1) 한겨레 [포토] 장애인 이동권 완전 보장하라

<https://www.hani.co.kr/arti/society/handicapped/1035610.html>

2) 더 인디고 서울시의 이동권 약속, 연이은 파기에 '문건'까지... 지하철 시위 '격화' 예고

<https://theindigo.co.kr/archives/30884>

다. 셋째, 합법적인 수단을 모두 사용한 후에 최후수단으로서 선택해야 하며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³⁾ 전장연의 시위는 과연 존 롤스의 시민불복종에 의거한 합당한 활동일까? 먼저 존 롤스의 시민 불복종에 의거한 시위의 경우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에 의거한 활동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제도를 설립함으로써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행동이다. 여기서 전장연의 시위에 첫 번째 모순점이 생기게 된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 즉 장애인이 이동권을 침해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이들의 요구는 롤스의 시민불복종에 의거했을 때 목적은 합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겠다에서 나온 이들의 행동은 오히려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이루려고 하는 점에서 모순점을 갖는다. 특히 시민불복종의 순기능이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권리와 권리 실현 과정에 요구되는 책임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같은 장애인 단체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교통장애인협회(교통장애인협회) 측에서는 “전장연의 요구 사항에 동의하긴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떨어뜨리는 이런 방식의 시위를 다른 장애인 단체와 협의도 없이 벌이는 것은 명백히 잘못됐다”라고 밝혔으며 시민들은 “장애인들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선을 넘은 것 아니냐”는 불만을 터뜨리는등⁴⁾ 시위의 권리실현과정에서 책임에 대한 이해를 받지 못하는 시위임과 동시에 오히려 장애인의 대한 부정적인식만을 강화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시위라는 점을 미루어 보아 이들의 시위는 시민 불복종론에 의거한 적합한 시위는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장연의 시위는 내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나 시위의 외적으로도 문제를 심화시킴으로써 논란을 불고 있는데 다음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3. 클라우스 레플레와 전장연의 시위, 법의 판결과 판례에 따른 시각의 해석.

먼저 전장연의 시위의 외적인 문제점에 대해 시사하기 전 이번활동에서 인용한 도서의 예시를 바탕으로 그들의 행동을 분석해보도록 하자. 이번에 인용한 도서인 '풀 커 키츠 -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에서는 시민의 행동의 자유에 따른 집회의 자유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헌법상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위를 주도한 이들을 처벌함으로써 시위 또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일반적 조례가 헌법의 내용을 부정한 셈이 되는 것이다. 클라우스 레플레 또한 이러한 역설로 인해 만들어진 피해자중 한명이다. 대학생이었던 그는 독일 철도국의 지하철 요금인상 정책에 반대하여 1966년 10월 24일 루돌프 광장역에서 선로에 앉아 농성을 벌이는 일종의 비폭력 시위를 계획 및 실행하여 지하철 요금인상의 부당성을 알리고 시민의 권리를 향상시키고자 존 롤스의 시민불복종에 의거한 시위를 한 것이다. 전장연과 비슷하게 말이다.⁵⁾ 이들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재판에 오르게 되었는데 한번 전장연의 시위와의 유사성을 비교해봄으로써 법적으로 전장연의 시위는 왜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레플레 판결로 알려진 이들의 판결은 꽤나 충격적이게 다가오게 되었는데 이들의 행위는 물론 지하철의 선로를 점거하기만 하였을 뿐 딱히 시민들에게 무력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강요하진 않았다. 즉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자신들의 의견을 내세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였던 롤스의 시민 불복종에 틀을 공유하는 시위인 셈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지하철의 운행에 장애를 줘 다수에 시민들에게 무력으로 폭력을 저지르진 않았으나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지하철을 이용하지 못하게된 시민들에게 자신들의 의견만을 강하게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정신적 강요가 강하였다는 점에서 폭력성을 가지고 있음을 비판하였고 시위 주동자인 클라우스 레플레와 시

3) 존 롤스의 시민불복종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 한국교원대학교 이미란 (2016)

https://academic.naver.com/article.naver?doc_id=177001767

4) 조선일보 - 전장연 지하철 시위에 출근길 대란... 장애인총연합 “이런 방식 반대”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4/21/HFSOY7F6S5CC5FXOLH52H5Y5AA/

5) 풀 커 키츠 -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1장 2절 : 무엇이 폭력인가 - 레플레 판결)

위에 참여하였던 시민 다수를 처벌한 바가 있다. 정신적 강요가 곧 폭력성을 정의한다는 점에서 약간의 모순점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 폭력이라는 것은 물론 언어폭력과 같이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또한 비물리적 폭력의 일종으로 현행법상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는 공연성과 특정성 즉 언어폭력으로 타인에게 모욕을 저질렀음을 제 3자가 입증이 가능한 상황이나 모욕하고자 하는 대상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⁶⁾ 레플레의 판결이 이러한 모순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시위는 결코 타인을 모욕하기 위해 집회 되진 않았으며 단지 지하철 요금인상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비폭력적 시위를 바탕으로 알려 시민의 이동권을 부당한 가격인상정책을 통해 침해받지 아니하게 만들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법에서는 이들이 아닌 독일 철도국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다. 왜 이런 판결이 만들어지게 되었을까? 이는 구내 현행법에 의거한 판례내용을 통해 그 이유를 찾아볼수 있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판례에서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어론 출판의 자유와 함께 표현의 자유의 하나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되 평화적 수단을 이용한 의견표명은 보호되나 다만 다수인의 도로 및 공공장소를 시위장소로 사용하면서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과정에서 교통 장애를 불러일으키거나 일반인에게 불편을 주는등의 시위의 경우 처벌될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⁷⁾ 즉 교통 장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레플레 판결은 합당하다. 전장연의 경우에도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시위를 일으켰다는 점과 교통장애를 유발시켰다는 점에서 이들의 행위또한 법적으로 행위의 정당성에 따른 동의를 받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시위의 부당성의 핵심인 정신적 강요로 인한 폭력성이 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 또한 헌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이들의 행위를 판단하였을 때 이들의 행위는 강요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강요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행위로 법에서는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만을 국한하는 것이 아닌 간접적인 유형력도 포함함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⁸⁾ 여기서 우리는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전장연의 시위든 레플레의 시위든 일단 시민들에게 간접적으로 피해를 준 것은 공통적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점거방식에 따른 차이점이 있겠으나 이들의 행위는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을 무단으로 점거하여 시민들의 이동권을 침해하고 아울러 정신적 강요를 피할 수 없는 상황 즉 공공재를 이용할 수 없게 하는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를 통해 본인들의 시위를 보게끔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이들의 행위는 강요죄 및 일반교통방해를 내포한 위법성을 가지고 있다⁹⁾는 점에서 두 시위 모두 롤스의 시민 불복종을 바탕으로 한 행위였다고 하여도 민사법상에서 보장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이 과정에서 직간접적인 피해를 양산하였다는 점에서 미루어 보아 이들의 시위의 정당성을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4. 부당성에 대한 반론과 재반론 그리고 시위의 결론.

전장연의 시위에 부당성을 논하는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반론이 제시될 수 있다. 먼저 전장연의 시위는 존 롤스의 시민불복종의 틀을 지키는 시위임과 동시에 폭력에서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위에 임한다는 점으로 보았을 때 합당한 시위이다. 라는 반론을 할 수도 있겠으나 한번 중점적으로 생각해보자. 과연 이들의 시위가 적극

6) 경기 매일 - 명예훼손죄, 모욕죄의 성립요건인 공연성이란?
<http://www.kg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263257>

7)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5도1773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일반교통방해

8) 대법원 2021.11.25. 선고 2018도1346 판결 강요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안 판결문

9) 법안 : 일반교통방해 대법원 2018.1.24. 선고 2017도11408 판결문 일부 인용.

적인 의견표명 하나만으로 이들의 행위가 용인될 수 있을까? 법적으로 보았을 때 이들의 행위는 일종의 정신적 강요를 내포한 강요죄임을 주장은 할 수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법안 내용에 국한한 일반화의 오류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반론은 한편으로는 합당한 반론이라 생각할 수 있겠으나 법을 어긴 위법성을 가진 행위라는 점은 지워지지 않는다. 일반교통방해죄가 이에 해당하는데 법에서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적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¹⁰⁾ 즉 합당한 이유 없이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는 위법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사례 또한 많은 것이 현실이다. 지각해 시험을 보지 못했다는 서울의 한 대학생은 이날 오전 익명게시판에 “학기 후반에 바빠서 발표도 땡기고 매주 과제도 칼같이 하고 오늘 시험공부도 7학기동안 본 중간고사 중 가장 열심히 준비했는데 정작 가지도 못하고 끝났다”며 전장연 시위로 인해 피해를 받았음을 호소하고 있으며¹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한 가운데 이들이 시위를 하고 지나간 자리에 전단이 어지럽게 붙여져 있는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작성자 A씨는 지하철 내부와 역에서 촬영한 사진을 공유하며 “이 많은 것은 누가 치우냐”라고 말했다. 함께 올라온 사진을 보면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요구하는 스티커 전단이 지하철 벽면 곳곳에 붙여져 있었고, 전장연이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관련 예산을 늘려달라며 ‘출근길 지하철 타기’ 시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붙인 것으로 보이는데, 시민들 사이에서는 지하철 청소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고의로 피해를 주는 전장연의 시위에 비판적인 의견이 대부분¹²⁾인 것처럼 전장연의 시위는 롤스의 시민 불복종의 틀을 어느 정도 공유는 하고 있으나 위법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회적 연대를 얻지 못하는 점을 미루어 보아 이들의 시위는 결코 정당화 될수 없다는 점을 찾아볼 수 있다.

일부는 또한 이런 반론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령 이들의 행위가 위법성을 가진다고 하되 롤스의 시민 불복종 원칙에 의거하였을 때 최후의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처벌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전장연의 시위 참여자의 대다수는 법의 처벌을 수용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시위에 임하기에 이들의 시위가 무조건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롤스는 시민 불복종에 의거한 시위의 전제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목적이 정당한가, 공익을 위한 것인가, 비폭력적인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성공의 가능성이 있는가, 처벌을 감수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와 같은 전제조건이 이루어져야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 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¹³⁾ 차례대로 이들의 행위의 정당성을 논하자면 먼저 시위의 목적은 장애인의 이동권 처우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약속받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시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이들의 이동권 처우를 2005년 이래로 꾸준히 개선시키려는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령 우리가 지하철 또는 대중교통을

10) 일반교통방해죄 - 대법원 판례 정의 일부 인용.

11) 중앙일보 - 전장연 지하철 탄날...“빡세게 준비한 시험 못갔다” 학생들 눈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5301#home>

12) 데일리안 - "치우는 건 청소하시는 분 몫"...전장연 시위 휩쓸고 간 현장
<https://m.dailian.co.kr/news/view/1106149>

13) 서울교육나침반 - 사례로 살펴보는 시민 불복종의 조건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seouledu2012&logNo=220874799221>

이용할 때 지하철 역사 내부에는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와 무빙워크 그리고 전동차 내부에는 장애인 전용 휠체어 좌석이 마련되어 있는 등 여러모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개선 시키는 데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100% 도입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시위는 약속을 받기 위해서가 아닌 도입의 촉구만을 바라고 있는 데에 있어 시위의 목적에서 정당화되기에는 옳지 않은 목적이라 생각한다. 만약 서울시 또는 광역자치단체 측에서 한 번도 장애인의 이동권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내세우지 않았거나 정책만 내세우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않았다는 전제가 있었다면 이들이 주장하는 목적은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의 서울은 장애인도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두어 현재까지도 실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이들의 목적은 결코 완전히 타당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렵다.¹⁴⁾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를 미루어 볼 때 이 또한 온전한 목적을 상실하였다고 봐도 무방하다. 가령 공익의 경우 공공의 이익 즉 시민이 법 또는 사회제도로 인한 부당한 판결을 받았을 때 또는 사회기관의 행정적 절차의 부재로 인한 피해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행정기관인 서울특별시청에서는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활발히 펼치고 있으며 오히려 재정의 부재로 인한 이동권 정책의 교착 상태는 단지 서울시 측의 문제가 아닌 기획재정부 또는 정부 부처나 분기별 예산 확보의 정체로 인한 문제일 뿐 서울시에서 장애인의 처우개선에 게으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어음이 있다고 보인다. 그리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이행되는 시민 불복종의 목적에서 보았을 때 온전히 공익을 위해서다. 라고 판단하는 데는 행정적 절차는 이미 실현된 지 오래 이고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익을 증진 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한 현재로서는 이들의 주장은 공익을 목적이다. 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비폭력적인 점과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점은 얼추 보아 이들의 시위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과연 성공할 수 있는 시위인가라는 점이다. BBC 퓨처의 데이비드 톰슨은 시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비폭력 투쟁도 중요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시민들의 연대를 이끌어 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¹⁵⁾ 특히 부분적으로 대부분의 비폭력 시위 또는 시민 불복종 사례의 경우 숫자에 강점이 영향을 끼쳤다. 덴버 대학의 요제프 코벨 국제학부 교수인 에리카 체노웬스 교수는 시위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3.5%의 법칙을 말하고 있다. 3.5%의 법칙이란 국가의 전체 인구중 3.5%가 비폭력 시위를 지속할 경우 정권이 유지될 수 없다는 이론으로 즉 삼인성호(三人成虎)라는 사자성어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연대를 불러일으키는 시위의 경우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근에 이뤄졌던 민중 시위인 박근혜 정부의 대한 퇴진요구에 따른 민중총궐기 시위의 경우 2016년 9월 이래로 약 1000만여명이 넘는 국민이 시위에 참여하였고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사례가 있다.¹⁶⁾ 즉 정리하자면 시위는 곧 연대의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 성공여부가 정해져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전장연의 시위를 한번 살펴보자. 피해사례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시민들은 전장연의 시위를 옹호하는 여론보단 반대 및 퇴진을 요구하는 여론이 강하게 현실이다. 특히 시위과정에서 혜화역 승강장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내용을 알리는 선전물은 누군가에게 뜯겨 나갔고, 지하철 선전전을

14)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 및 실천 계획 (2015.12.3.)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 민관 합동 T/F - 통계자료 및 현행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정책 일부 인용.

15) BBC NEWS 코리아 - 3.5% 법칙: 소수는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https://www.bbc.com/korean/news-49766460>

16)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 - 위키백과 문서 일부 내용 참조.
https://ko.wikipedia.org/wiki/%EB%B0%95%EA%B7%BC%ED%98%9C_%EB%8C%80%ED%86%B5%EB%A0%B9_%ED%87%B4%EC%A7%84_%EC%9A%B4%EB%8F%99

하는 장애인 활동가는 길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폭언과 협박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처럼¹⁷⁾ 많은 국민의 호응과 연대를 받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는 전장연의 시위는 3.5%의 법칙에 의거 하였을 때 성공 가능성이 낮은 시위임과 동시에 국민의 연대와 동감을 이끌어내는데 효과적이지 못한 시위임을 미루어 보아 연대적 입장에서 가능성은 낮은 시위로 이는 합당하지 못한 시민 불복종이라 볼 수 있다.

5. 결론

전장연의 시위는 과연 정당한 시위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 2절에서는 존 롤스의 시민불복종에 전제조건과 전장연 시위를 서로 대조해봄으로써 전장연의 시위는 롤스의 시민불복종에 틀을 어느정도 공유를 하고는 있으나 제3자 또는 같은 장애인 단체로부터 연대를 얻지 못하는 시위라는 점을 알 수 있었으며 3절에서는 도서 (폴 커 키츠 -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에서 언급된 전장연의 시위와 유사한 레플레 판결에 의거하여 이들의 시위의 위법성 즉 일반교통방해죄와 강요죄 그리고 정신적 강요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당한 점을 법안 내용을 인용하는 과정을 통해 논증하였으며 4절에서는 존 롤스의 시민 불복종 전제조건과 관련된 반론 즉 전장연의 시위는 시민 불복종에 의거한 합당한 시위라는 점과 비폭력적이다. 라는 점에 대한 반론을 진행함으로써 전장연 시위가 부당하다는 필자의 논증을 강화하였다.

본 활동은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전장연 시위가 부당하다는 입장에서 과연 어떤 부분이 부당한지에 대해 법안 내용에 대해 분석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시위가 단순히 다수의 시민들의 이동권만을 침해한다라는 논거를 강화하여 이들의 시위의 부당성에 대한 입장을 강화 시킴으로써 목적과 행동의 부당함을 알리는데에는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다수의 시민 불복종 사례는 위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특히 롤스는 시민 불복종을 하는데 전제조건으로 처벌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는 시위에 참여하는 참여자에게 있어 위법성을 따지는 것은 한편으로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 있어 법안을 논하는 것은 처벌을 감수하는 입장해서 하는 행동과 역설적이기 때문에 논증을 통해 이들의 행동에 종단을 요구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전장연의 시위는 현재 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이들의 시위를 멈추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로 보장받지 못한 이동권을 보장받고 원활한 통근이 이루어지길 기원하고 있다. 물론 논증과정에서 이들의 시위는 여러모로 의견이 합당하지 않거나 근거가 부족하긴 하나 사회제도에 반하는 시민 불복종 이란 점에서는 틀을 공유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까지도 자신들의 입장만을 관철시키는 이들의 행동은 결코 옹호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경찰에서도 미흡한 대처로 시위를 그저 지켜보기만 할뿐 효과적인 시위 저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이들의 시위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위저지를 위한 행정적 절차가 만들어지길 기원한다.

17) 아시아경제 - [이슈정리] 전장연, 이동권 보장 '지하철 시위' 반대 여론도
<https://cm.asiae.co.kr/article/2022021618491810985>

참고 문헌

1. 논문

존 롤즈의 시민불복종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 한국교원대학교 이미란 (2016)

https://academic.naver.com/article.naver?doc_id=177001767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5도1773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일반교통방해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5%EB%8F%8417738>

대법원 2021.11.25. 선고 2018도1346 판결 강요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안 판결문

<https://help.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seqnum=8090&gubun=4&searchOption=&searchWord=>

대법원 일반교통방해 대법원 2018.1.24. 선고 2017도11408 판결문.

<https://www.law.go.kr/LSW/preclInfoP.do?precSeq=193345>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 및 실천 계획 (2015.12.3.)

서울특별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 민관 합동 T/F - 통계자료 및 현행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정책

http://hrcity.or.kr/bbs/board.php?bo_table=B30&wr_id=77

2. 인터넷 자료

한겨레 [포토] 장애인 이동권 완전 보장하라

<https://www.hani.co.kr/arti/society/handicapped/1035610.html>

더 인디고 서울시의 이동권 약속, 연이은 파기에 '문건'까지... 지하철 시위 '격화' 예고

<https://theindigo.co.kr/archives/30884>

조선일보 - 전장연 지하철 시위에 출근길 대란... 장애인총연합 "이런 방식 반대"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4/21/HFSOY7F6S5CC5FXOLH52H5Y5AA/

경기 매일 - 명예훼손죄, 모욕죄의 성립요건인 공연성이란?

<http://www.kg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263257>

중앙일보 - 전장연 지하철 탄날... "빡세게 준비한 시험 못갔다" 학생들 눈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5301#home>

데일리안 - "치우는 건 청소하시는 분 몫"...전장연 시위 휩쓸고 간 현장

<https://m.dailian.co.kr/news/view/1106149>

서울교육나침반 - 사례로 살펴보는 시민 불복종의 조건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seouledu2012&logNo=220874799221>

BBC NEWS 코리아 - 3.5% 법칙: 소수는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https://www.bbc.com/korean/news-49766460>

아시아경제 - [이슈정리] 전장연, 이동권 보장 '지하철 시위' 반대 여론도

<https://cm.asiae.co.kr/article/2022021618491810985>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 - 위키백과 문서 일부 내용 참조.

https://ko.wikipedia.org/wiki/%EB%B0%95%EA%B7%BC%ED%98%9C_%EB%8C%80%ED%86%B5%EB%A0%B9_%ED%87%B4%EC%A7%84_%EC%9A%B4%EB%8F%99

3. 도서

플 커 키츠 -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1장 2절 : 무엇이 폭력인가 - 레플레 판결)